

특 허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허10619 등록취소(상)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형장우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주재연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범 담당변호사 박진수

소송대리인 변리사 윤건준

변 론 종 결 2026. 7. 15.

판 결 선 고 2026. 9. 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25. 11. 5. 2022당341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의 공유자이다.

1)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2017. 1. 10. / 2017. 12. 5. / 제1309872호

2) 표장: **무궁화**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커피, 코코아, 우유가 함유된 커피음료

나. 농업회사법인 라피움 무궁화 주식회사의 무궁화 관련 상품 판매

원고 A은 2020. 2. 24. 농업회사법인 라피움 주식회사(이후 '농업회사법인 라피움 무궁화식품연구소 주식회사'로, 다시 '농업법인 라피움'으로 순차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라피움'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라피움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2021. 8. 말경 그 메뉴판과 벽면에 '무궁화라떼', '무궁화에이드', '무궁화다' 등 '무궁화'를 포함하는 음료 이름을 표시하였다. 또한 라피움은 2021. 12.경 무궁화가 함유된 무궁화 초코볼 등을 판매하였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피고는 2022. 12. 9. "이 사건 등록상표는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지정상품 전부에 관하여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을 취소한다는 심판을 청구하였다(이하 위 심판청구를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22당3410호로 심리한 다음, 2025. 11. 5.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라피움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로서, ① 2021. 8. 말경 카페 매장 내부 벽면과 메뉴판(을 제1호증)에 '무궁화라떼', '무궁화에이드', '무궁화다'를 표시하였고, ② 2021. 12.경 무궁화 초코볼 등에 첨부된 제품 설명 카드(갑 제5호증)에도 '무궁화'를 표시하였으며,¹⁾ ③ 2021년경 커피 포장지(갑 제7호증)에도 '무궁화'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라피움이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구 상표법(2025. 5. 27. 법률 제20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취소사유가 없다.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을 취소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은 갑 제4 내지 6호증 중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로서 사용된 부분은 갑 제5호증의 제품 설명서 좌상단의 '무궁화' 부분이라고 진술하였다(제1회 변론조서 참조).

① 라피움이 카페에서 제공한 음료는 주문자의 주문에 따라 즉석에서 제조하여 판매되는 것이므로 유통성과 양산성이 없어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품'이 아니다. 설령 위 음료가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무궁화라떼' 등은 그 음료의 재료를 표시하는 것일 뿐 그 음료의 상품으로서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다. '무궁화라떼' 등은 일체로 관찰되므로 라피움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② 원고들이 제출한 제품 설명 카드(갑 제5호증)는 언제 어떤 제품에 첨부되었는지 알 수 없고, 여기에 기재된 '무궁화'는 그 제품에 함유된 성분으로서 무궁화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상표로서 사용된 것도 아니다. ③ 원고들이 제출한 커피 포장지(갑 제7호증)는 무궁화차의 포장재를 조작하여 만든 것에 불과할 뿐이고, 위 커피 포장지에 '무궁화'가 언제 표시되었는지, 그 포장지에 커피가 실제로 들어있는지 등을 알 수 없다. 따라서 라피움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했다는 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여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 피청구인(상표권자)이 당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 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한

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표의 불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상표의 사용이 인정되려면 상표권자 또는 그 사용권자가 상표를 자기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서비스표에 관한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후1071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5후1980 판결 참조). 구 상표법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인도하거나 전기통신 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수입하는 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11호 각 목).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라피움이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상표로서 사용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카페의 메뉴판, 매장 내부 벽면에 표시된 '무궁화'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라피움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2021. 8. 말경 그 메뉴판과 매장 내부 벽면에 '무궁화라떼', '무궁화에이드', '무궁화다' 등 '무궁화'를 포함하는 음료 이름을 표시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태양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나) 위 카페 메뉴판에는 '무궁화 음료', '커피 음료', '건강한 메뉴', '음료+메뉴 세트'라는 항목 명칭들이 큰 글씨로 붉게 기재되어 있고, 위 각 항목 아래에는 각각 해당하는 개별 음료나 식품 메뉴가 더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었다.²⁾ ① '무궁화 음료' 항목과는 별도의 항목으로 기재된 '커피 음료' 하단에는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바닐라라떼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커피 음료'는 '커피를 재료로 포함하는 음료'를 나타내는 것이 분명한 점, ② '무궁화 음료'와 '커피 음료'의 음료 이름 표시 방식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무궁화 음료' 하단에 기재된 '무궁화라떼', '무궁화이드', '무궁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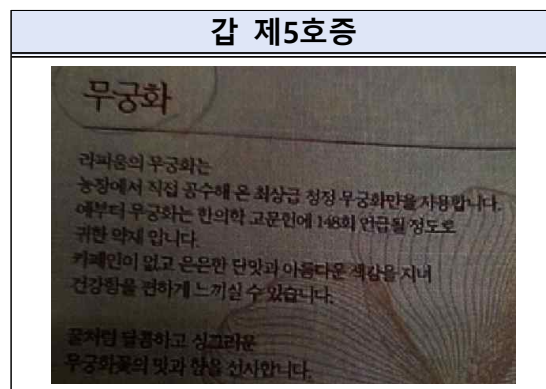
2) 을 제1호증의 1(블로그 게시물로 보인다) 제3쪽에는 메뉴판 상단 일부가 잘려 있고, 이로 인하여 위 메뉴판에 '무궁화 음료', '커피 음료'라는 분류 명칭 기재가 직접 확인되지는 않으나, 을 제1호증의 1의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을 제1호증의 1에는 을 제1호증의 2와 유사하게 '건강한 메뉴', '음료+메뉴 세트'가 비교적 큰 글씨로 붉게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앞서 본 메뉴판 사진 아래에 '메뉴판을 보니 무궁화 음료가 있어서(후략)'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을 제1호증의 1의 게시일은 2021. 8. 30.로 을 제1호증의 2의 게시일인 2021. 8. 28.과 근접한 점, ④ 을 제1호증의 1에서도 을 제1호증의 2와 유사한 형태의 메뉴판이 게시되어 있고, 을 제1호증의 1 제3쪽의 메뉴판에서도 그 음료나 식품 구성을 달리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호증의 1 제3쪽의 메뉴판에도 '건강한 메뉴', '음료+메뉴 세트'뿐만 아니라 을 제1호증의 2와 같이 '무궁화 음료', '커피 음료'라는 분류 명칭이 기재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중 '무궁화' 부분은 해당 음료가 '무궁화를 재료로 포함하는 음료'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 음료의 상품으로서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매장 내부 벽면에는 '무궁화라떼'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고, 그 문구 위에는 유리잔과 여기에 담긴 꽃이 그려져 있으며, '무궁화볼', '무궁화차'도 비슷한 방법으로 표시되어 있다. 꽃 그림은 무궁화가 그 음료 등에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므로, 매장 내부 벽면의 '무궁화라떼' 등도 해당 음료가 '무궁화를 재료로 포함하는 음료'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 음료의 상품으로서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제품 설명 카드에 기재된 '무궁화'

원고들이 제출한 제품 설명 카드(갑 제5호증)가 언제 어떤 상품에 첨부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라피움이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무궁화 초코볼 등에 위 제품 설명 카드를 첨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카드에는 아래와 같이 '무궁화'라는 문구 아래에 무궁화의 산지, 맛과 향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문구는 무궁화를 해당 식품의 주요한 재료로서 표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위 문구가 해당 식품의 상품으로서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다.



3) 커피 포장지 관련

원고는, 라피움이 2021년경 커피 포장지(갑 제7호증)에 '무궁화'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포장지에 유통기한이 2021. 10. 15.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라피움은 우측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궁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무궁화차를 판매한 바 있고, 위 무궁화차 포장지 중 '다'가 적혀 있는 부분을 잘라내고 위와 같은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유통기한이 과거 시점으로 기재된 포장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우측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갑 제7호증에서도 '다' 중 중성 'ㅏ'의 상단 부분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7호증 역시 위 무궁화차 포장지를 잘라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 라피움이 2021년경 위 포장지에 '무궁화'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없다.



<을 제2호증의 5>



<갑 제7호증(일부)>

다. 중간결론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로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소영

판사 박은희

판사 권원명